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601 |
|----------|-----|

2020. 12. 18.(금)  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0년 11월 27일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12월 8일

-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영배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○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 기반 마련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및 현안업무 추진 등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정원의 총수 (안 제2조)

- 총 정 원 : 4,376명 → 4,438명 (+62명)

- 집행기관의 정원 : 1,739명 → 1,801명 (+62명)
- 소방공무원 정원 : 2,516명(변동 없음)
- 교육공무원 정원 : 43명(변동 없음)
- 의회사무처 정원 : 78명(변동 없음)

○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(안 별표 3)

- 일반직 : 1,587명 → 1,639명 (+52명)
  - ▶ 3급(+1), 4급(+3), 5급 이하(+49), 전문경력관(△1)
- 연구직 : 189명 → 197명 (+8명)
  - ▶ 연구관(+1), 연구사(+7)
- 지도직 : 28명 → 30명 (+2명)
  - ▶ 지도사(+2)
- 교육공무원 : 43명 (변동없음)
  - ▶ 교수·부교수·조교수·전임강사(+1), 조교(△1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- 이 개정조례안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종 감염병에 선제적,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,
- 유사·중복기능 업무를 통폐합하고 공통·지원기능 업무를 축소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원조정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601 호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년 월 일<br>(제 회) |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충 청 북 도 지 사   |
| 제출연월일 | 2020년 11월 27일 |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601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20년 11월 27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 기반 마련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및 현안업무 추진 등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(안 제2조)
  - 총 정 원 : 4,376명 → 4,438명 (+62명)
 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739명 → 1,801명 (+62명)
  - 소방공무원 정원 : 2,516명(변동 없음)
  - 교육공무원 정원 : 43명(변동 없음)
  - 의회사무처 정원 : 78명(변동 없음)
-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(안 별표 3)
  - 일반직 : 1,587명 → 1,639명 (+52명)
    - ▶ 3급 (+1), 4급 (+3), 5급 이하 (+49), 전문경력관 (△1)
  - 연구직 : 189명 → 197명 (+8명)
    - ▶ 연구관 (+1), 연구사 (+7)
  - 지도직 : 28명 → 30명 (+2명)
    - ▶ 지도사 (+2)
  - 교육공무원 : 43명 (변동없음)
    - ▶ 교수·부교수·조교수·전임강사 (+1), 조교 (△1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##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4,376명”을 “4,438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739명”을 “1,801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| 직급별 \ 기관별           | 총계    | 본 청 | 의 회 | 직속기관 | 사업소 | 출장소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|
| 총 계                 | 4,438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정무직 계               | 1     | 1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도지사                 | 1     | 1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일반직 계               | 1,639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1~2급                | 1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| 1   |
| 2~3급                | 2     | 1   | 1   |      |     |     |
| 3급                  | 12    | 10  |     | 1    |     | 1   |
| 3~4급                | 2     | 2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4급                  | 75    | 50  | 8   | 5    | 7   | 5   |
| 5급이하 소계             | 1,532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전문경력관 소계            | 15   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별정직 계               | 12   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1급 상당               | 1     | 1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4급 상당               | 3     | 3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5급상당 이하 소계          | 8    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연구직 계               | 197  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연구관                 | 33    |     |     | 31   | 2   |     |
| 연구사                 | 164  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지도직 계               | 30   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지도관                 | 6     |     |     | 6    |     |     |
| 지도사                 | 24   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소방직 계               | 2,516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소방정                 | 17    | 5   |     | 12   |     |     |
| 소방령이하               | 2,499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교육공무원 계             | 43   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총장                  | 1     |     |     | 1    |     |     |
| 교수·부교수·<br>조교수·전임강사 | 31    |     |     | 31   |     |     |
| 조교                  | 11   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
※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

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4,376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739명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 |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<br/>----- <u>4,438명</u>-----<br/>--.</p> <p>1. ----- <u>1,801명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|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【지방자치법】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 (생략)

### 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~⑤ (생략)

#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개정사유

-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 기반 마련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및 현안업무 추진 등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 발생

## 3. 관련조문

- 정원조정 내역 (안 제2조)
  - 총정원 : 4,376명 → 4,438명(+62명)

## 4. 비용 추계결과

- 재정수반요인 :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
- 추계의 전제 : 증원 62명(일반공무원 62명)
- 추 계 결 과 : 인건비 27,241백만원 정도 추가 소요
- 재원조달방안 : 도비100%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| 계          | 1차년도<br>(2021년) | 2차년도<br>(2022년) | 3차년도<br>(2023년) | 4차년도<br>(2024년) | 5차년도<br>(2025년)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인건비(일반공무원) | 27,241,430 | 5,351,096       | 5,399,255       | 5,447,849       | 5,496,879       | 5,546,351       |

※ 매년 임금인상률 0.9%(예상치) 적용 계산